

對 이란 제재 현황 및 영향 전망

1. 이란 핵문제의 진행 경과

□ 이란 핵문제의 발단

- 이란 핵문제는 2002년에 이란의 반체제 단체인 MKO(Mujahedin AL Khalq Organization)가 이란 중부의 나탄즈 지역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존재함을 폭로하면서 국제사회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부각됨.
- 이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EU 국가가 서방측을 대표하여 이란과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고 개혁 성향의 하타미 정부 시절에 이란이 자발적으로 우라늄 농축활동을 중단토록 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음.

□ 이란 핵문제 심화

- 2005년 현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의 강경보수 정부가 집권하면서 과거 정부의 핵정책을 굴욕적인 것으로 규정하여 우라늄 농축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천명하였고, 2006년 핵 활동을 재개하였음.
-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 UN 안보리는 3차례에 걸쳐 제재 결의('06. 12. 23, '07. 3. 24, '08. 3. 3)를 채택하였고, 미국 및 EU 일부 국가에서는 이와 별도로 자체적인 각종 경제·금융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이란 앞 합의안 제시

- 2008년 UN 안보리의 제3차 제재 결의,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강경발언 등으로 미국과 이란 양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하였으나, 2009년 1월에 출범한 오바마 정권은 외교적 개입과 협상을 통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낮아짐.
- 2009년 10월 1일 프랑스, 러시아, 미국은 서방측을 대표하여 이란과 IAEA 사찰단의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사찰실시, 이란 보유 저농축 우라늄의 제3국 이전 가공, 핵시설 목적의 평화적 성격 여부 집중 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하였음.
- 이란측은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저농축 우라늄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반출하는 방식으로 합의한 협상안에 대하여 일부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최종 입장 표명을 보류 중임.

2. 對 이란 제재 현황

가. UN 안보리의 제재 현황

□ 안보리 결의 1737('06. 12. 23 채택)

- 이란에 우라늄 농축활동의 중단 등 기존 IAEA 결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관련 활동 거래 중단, 금융자산 동결, 경제제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 안보리 결의 1747('07. 3. 24 채택)

- 이란의 핵활동 및 미사일 등과 관련된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된 기관(Bank Sepah 등 35개)과 개인(40명)을 자산동결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 국제금융 및 대외송금 등 대외거래를 전면 중단하였음.

□ 안보리 결의 1803('08. 3. 3 채택)

- 핵관련 이중용도품목 거래금지, 이란의 항공·해상 화물에 대한 검색 허용, 對 이란 교역관련 금융지원 신규약정시 핵활동에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Bank Melli, Bank Saderat 등 이란은행과의 거래 주의를 촉구하였음.

□ 안보리 결의 1835('08. 9. 7 채택)

- 이란이 기존 결의(1737, 1747, 1803) 및 NPT 합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촉구하였음.

나. 미국의 제재 현황

□ 이란제재법(ISA)

- 1996년 8월 5일 미국은 이란제재법을 제정하여 원유, 천연가스 등 이란의 에너지 분야에 투자한 외국기업 및 단체*에 대하여 미수출입은행 대출 및 신용보증 거부, 미 군수 기술의 이전 금지, 미국 은행의 연간 10백만 달러 이상의 대출 금지, 미 정부 채권거래 및 재정자금 예치 금지, 미 정부 조달사업의 참여 배제, 대미 수출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 연간 200백만불 이상의 투자 또는 연간 개별투자사업이 10백만불이 넘고 전체 투자사업규모가 20백만불을 초과하여 이란의 석유에너지 개발 능력에 크게 기여한 경우

□ 행정명령

- 미국 정부는 행정명령 12957('95. 3. 15)을 제정하여 미국의 대이란 에너지 투자를 금지하였고, 행정명령 12959('95. 5. 6)으로 미국의 대이란 교역·투자를 금지하였으며, 행정명령 10359('97. 8. 19)을 통해 미국의 대이란 무역, 투자활동을 전면 금지하였음.

□ 미 재무부 대이란 금융제재

- 2006년 9월 이란의 Bank Saderat을 거래금지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 2007년 1월에는 Bank Sepah를 거래금지 대상에 추가하였음.
- 2007년 10월 Bank Melli, Bank Mellat을 거래금지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미국 내 자산의 동결조치를 취하였으며, 2008년 10월에는 이란 수출개발은행(EDBI)도 거래금지 대상으로 지정하였음.

다. EU의 제재 현황

□ 이란 제재에 관한 공동입장(Common Position)

- EU는 2007년 2월에 UN 안보리 결의안 1737 기준을 준용하여 이란 제재에 관한 공동입장을 표명하고, EU 차원에서 개인·단체 등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를 취하였음.

□ 대이란 추가제재 공동입장

- 2008년 3월 UN 안보리 결의안 1803에 의거하여 대이란 교역, 금융, 신용, 보증, 보험 제공의 제한적 실시, Sedarat 은행 거래 통제 강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이란 선박, 항공기에 대한 검색 등의 제재 조치를 추가하였음.
- 2008년 6월 이란혁명수비대 장군 등 개인 15명, Bank Melli 등 기관 2개 등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여행금지 및 자산 동결 등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하였음.

3. 對 이란 추가 제재 전망

가. UN 안보리 추가 제재 전망

□ 추가 제재 조치 난항 예상

- UN 안보리 제재는 192개 전 회원국을 구속하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제재라고 할 수 있으나, 중국, 러시아 및 이들과 연대하는 비동맹 이사국으로 인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기 어렵고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2010년 상반기부터 새로운 제재 논의가 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은 전적으로 이란의 태도 변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음.
- 중국, 러시아 등은 대이란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과 핵무기 확산에 대한 위험성을 비교하여 자국의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임.

나. 미국 추가 제재 전망

□ 최근의 추가 제재 움직임

- 2009년 10월 14일 대이란 제재 적용 법안(Iran Sanction Enabling Act, H.R.1372)이 미 하원에서 승인되었음.
 - 이란 에너지 분야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해 미국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투자를 철회할 것을 장려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19개 주에서 주법으로 자체 시행하고 있는 조치를 연방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입법화함으로써 투자회수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이란 에너지 산업 분야에 20백만불 이상 투자한 기업*들에 대하여 미국 정부 연금 투자액 철회, 혹은 신규 투자 금지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 * 이란 에너지 분야에 대한 20백만불 이상 투자, 대이란 유조선 제공, 원유,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및 유지, 금융기관의 이란 에너지 분야에 대한 20백만불 이상 신용 제공 등
- 이란 정유 제재법안(Iran Refined Petroleum Sanctions Act, H.R.2194)이 2009년 12월 15일 하원 본회의 승인을 거쳐 2010년 초 상원에서 최종 법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양원 협의회를 통한 법안 심의 예

정임.

- 이란 정유 제재법안은 1996년 대이란 제재법안(Iran Sanctions Act ; ISA) 수정 및 대이란 경제제재 확대를 통하여 이란 핵문제와 관련 미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교적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대이란 원유 정제시설의 확대, 건설 및 보수 유지, 정유 관련 상품, 서비스, 기술, 정보의 판매, 임대, 제공 및 지원 시 해당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미국내 자산 동결, 미국인 및 미국기업과의 거래금지 등의 제재 조치 등을 부과할 예정임.
- ISA의 "Petroleum resources"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확대하여 기존 원유, 천연가스에서 원유, 가스 부산물, 운송선 및 파이프라인 등 관련 시설 및 운영, 유지에 필요한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하였음.

다. EU 추가 제재 전망

□ 금융,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추가 제재 조치 예상

- EU는 이란 은행에 대한 신규 제재, 이란과의 교역 관련 보험·재보험 제공 금지 등 금융 제재조치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란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금지, 에너지 관련 국영회사 간부들의 여행 제한 및 IRISL(Islamic Republic of Iran Shipping Lines, 이란국영선사)로부터의 선박 수주 금지, 거래금지 등의 조치 등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됨.

4.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전망

□ 미국의 對 이란 제재조치 강화 전망 및 영향

- 향후 사태악화시 안보리의 추가 제재 조치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에도

미국 정부는 기존의 행정명령과 ISA 등으로 EU를 비롯한 우방국들을 통하여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

- 금융제재조치 적용 대상 은행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다수의 이란 진출 상사 및 건설사들의 송금이 중단되어 기지원한 거래 회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담보제공, 예치금 및 채무회수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이란과의 통상거래가 위축될 수 있음.
- 금융 분야에서 보험, 보증 제공이 제한될 경우 수출 및 EPC, 조선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제재 강화로 인하여 IRISL 선박 이용이 금지될 경우 타 선사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운송 비용이 약 10%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¹⁾.
- 對 이란 제재조치가 추가되거나 강화될 경우 이란측의 반발이 예상되며, 우리 기업에 대한 보복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음.

* 한국상품 금수조치 및 우리 기업의 블랙리스트 등재 등

□ 핵사태 해결 이후 이란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준비 필요

- 이란의 대외 교역규모는 2003년 이후 국제유가 상승을 배경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미국 및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조치가 이란 교역 전체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최근 중국이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하는 등 아시아국가로 교역선이 대폭 대체되었음.
- 이란은 세계 원유매장량의 10%를 보유한 에너지자원 부국이며, 7,0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시장잠재력이 큰 나라임.

1) 이란의 국영선사 우대 조건으로 인하여 다수의 對 이란 수출기업들이 IRISL 선박을 이용 중

- 우리기업의 플랜트 수주 및 상품수출과 관련 잠재력이 큰 국가로서 향후 핵문제 해결 이후 본격적인 진출 확대를 위하여 시장상황 및 국제정세 동향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함.

[이란 주재원 / 이현정]